

제30차 CODEX식품표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이 회 정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I. 회의개요

1. 회의명

- 제30차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회의
(The 30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2. 회의기간

- 2002. 5. 6 - 5. 10

3. 회의장소 : 캐나다, Halifax, World Trade Centre

4. 참석현황 : 267명 (49개 회원국, 32개 국제기구)

5. 회의의제

의제번호	의 제	관련문서
	회의 개회 (Opening of the Session)	
1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CX/FL 02/1
2	총회 및 타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들 (Matters Referred from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other Codex Committees)	CX/FL 02/2 CX/FL 02/2-Add.1
3	Codex 규격중 표시규정 검토 (Consideration of Labelling Provisions in Draft Codex Standards)	CX/FL 02/3
4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CX/FL 02/2 CX/FL 02/2-Add.1
	Section 5-기준 및 Annex 2-허용물질 (Section 5-Criteria and Annex 2-Permitted Substances)	CL 2001/48-FL CX/FL 02/4
5	a) GM/GE 등 특정기술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안(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 : 정의 a) Draft Recommendations for the Labelling of Foods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Draft Amendment to the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 Definitions	CL 2001/22-FL CX/FL 02/5
	b) GM/GE 등 특정기술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안(GM/GE 등 특정기술용 식품의 표시에 관한 지침서안) : 표시규정 b) Draft Recommendations for the Labelling of Foods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the Labelling of Foods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 : Labelling Provisions	ALINORM 01/22A Appendix V CL 2001/43-FL CX/FL 02/6
6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분류명) (Draft Amendment to the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Class Names))	ALINORM 01/22A Appendix VI CX/FL 02/7
7	영양표시지침서에 관한 개정 초안(영양소목록) (Proposed Draft Amendment of the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Section 3.2 Listing of Nutrients))	ALINORM 01/22A Appendix VII CX/FL 02/8

의제번호	의 제	관련문서
8	건강 및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Proposed Draft Recommendations for Use of Health and Nutrition Claims)	ALINORM 01/22A Appendix VIII CX/FL 02/9
9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초안 : 원재료함량표시 (Proposed Draft Amendment to the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 Quantitative Declaration of Ingredients)	ALINORM 01/22A Appendix IX CX/FL 02/10
10	원산지표시에 관한 Discussion Paper (Discussion Paper o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X/FL 02/11
11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에 관한 Discussion Paper (Discussion Paper on Misleading Claims)	CX/FL 02/12
12	기타사업, 향후작업과 차기 회의일시 및 장소 (Other Business, Future Work and Date and Place of the Next Session)	CX/FL 02/11
13	보고서 채택 (Adoption of the Report)	

II. 주요 논의 내용

의제 2 : 타 분과위원회에서 외부된 사항

□ Traceability (역추적성) 관련

- 역추적성과 관련된 해당 CODEX 분과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향후 방향 논의
 - 캐나다는 일반원칙분과(CCGP) 및 수출입인증분과(CCFICS)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원산지표시 등 일부 Codex 표시기준 및 제품 기준에 Traceability나 제품추적(product tracing) 관련 개념과 유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

< Traceability와 Product Tracing >

- ◆ Traceability (역추적성) : 역추적성은 “어떤 제품을 기록 확인을 통하여 배경, 적용도 또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으로 ISO에 정의
 - 주로 제품이나 원료의 산지, 가공 내역, 판매 과정 및 장소 확인 등을 의미
- ◆ Product Tracing (제품 추적) : 기본적으로 Traceability와 유사한 의미
 - 미국은 식품에 위해가 있어 이를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Product Tracing이 필요하므로 ‘Traceability’ 대신 “Product Tracing” 사용 주장
- ◆ “Product Tracing” 사용시 SPS 규정만 적용 가능하며, “Traceability” 사용시 SPS와 TBT 규정 모두 적용 가능

- 미국은 식품에 위해가 없는 경우 표시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Traceability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
- 반면에 프랑스 등 유럽 연합은 표시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Traceability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제품 추적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Traceability 적용 필요성 강조
 - CCFICS나 CCGP 에서 Traceability를 논의할 예정이나, 표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아니할 것이고 다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동 분과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은 일반원칙분과에서 타 분과위원회에 제공할 일반지침을 준비중이며, 수출입인증 분과에서도 논의중인 사항이므로 동 분과에서 traceability에 대하여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제시- 또한 traceability 또는 product tracing에 관한 정의를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원칙분과에서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Traceability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캐나다의 문서를 회원국에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일반원칙분과에서 논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합의- 일반원칙분과는 2003.4월 Traceability나 Product Tracing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

의제 4 : 유기농 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개정 초안

□ 유기농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개정 초안중 Section 5의 범위 및 Annex 2의 허용물질

- 제 29차 회의에서 동 지침서 Annex 2 허용물질목록 개정과 이를 위한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자는 의견 제시에 따라 총회에 신규 작업 승인
- 제 24차 Codex 총회에서 신규 작업으로 승인되어 Section 5와 Annex 2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 유기농 식품 생산시 허용된 물질 목록과 예방 조치 사항 등
- Annex 2에 유기농 식품에 사용 가능한 36개 식품첨가물(Table 3)과 32개 Processing Aids (Table 4)을 지정하고 Section 5와 함께 회원국에 의견 조회하고 그 결과를 Electronic Working Group에서 종합하여 검토할 예정

의제 5(α) : 유전자변형/유전공학 등 특정기술용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안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 규격 개정안) : 정의

□ 추진 경과 (제 29차 CCFL, 제 24차 Codex 총회)

- 제 29차 회의 : 미국 등은 동 표시기준에 사용하는 용어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타 국제기구 및 Codex의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채택한 modern biotechnology라는 용어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GE/GM 대신에 modern biotechnology를 사용할 것을 제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은 modern biotechnology라고 표시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동 용어 사용에 반대 의사 표명
- 절충안으로 GE/GM외에 modern biotechnology 용어를 추가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합의
- 동 절충안에 대하여 24차 총회에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동 분과위원회에서 6단계로 다시 논의

□ 주요 쟁점 사항

- 미국, 브라질 등은 정의에서 Modern Biotechnology를 사용하고 있고, Codex 생명공학기술용용식품 특별작업반과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사

용하고 있으므로 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GM/GE 대신 Modern Biotechnology만을 사용하자고 주장

- 제 3차 Codex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 특별작업반 (2002.3.4--3.8)에서 상정한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의 위해도 분석에 대한 일반원칙(안)」과 「유전자재조합 식물에서 유래한 식품의 식품 안전성 평가 수행 지침(안)」에는 Modern Biotechnology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음
- 아일랜드, 인도, 국제소비자연맹 (Consumer International) 등은 GM/GE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용어이고 표시 목적으로 Modern Biotechnology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표명
 - 미국은 자국 소비자는 Modern Biotechnology로 더 잘 알고 있다는 입장 표명
- 스페인 등 유럽연합은 Modern Biotechnology를 정의에 포함시키는 대신 실제 표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석(footnote)을 추가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 이에 대하여 브라질은 표시에 사용하는 용어는 각 국가의 고유 결정 사항으로 주석 추가는 별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지침서의 제목을 “Modern Biotechnology”로 변경할 것을 요청
-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현행 지침(안)에 스페인이 제시한 주석을 삽입한 후 다음 회의에서 6단계로 재논의하기로 결정
- IFOAM은 미국이 주장하는 “Modern Biotechnology”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bio”가 유기농 식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GMO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 농업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

의제 5(b) : 유전자변형/유전공학 등 특정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지침안 (표시 규정)

□ 추진 경과

- 제 25차 회의 (1997) : GM식품 표시 권고안 개정 필요성 논의
 - 기존의 ‘포장식품의 표시에 대한 일반규격’의「Section 2 (정의)」와 「Section 5 (부가적인 의무표시사항)」를 개정하는 방식 채택
 - 제 28차 회의에서 개별 지침서로 논의하기로 합의
- 동 지침안은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표시규정, 혼입허용치, 면제조항, 표시방법, 시행 등 8개 조항으로 구성

- 제 29차 회의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목적과 적용범위만 논의
- GM 식품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입장 차이로 표시 대상 선정 기준 양분
 - 수출국 (1안) : 구성성분, 영양가 또는 용도가 기존 식품과 다른 경우에 표시
 - 수입국 (2안) : 유전자재조합 기술에서 유래한 DNA나 단백질이 존재하는 경우와 기존 식품과 다른 경우 및 다른 특성이 있을 경우도 표시

□ 주요 쟁점 사항

- ◆ 목적 : 소비자 건강 보호 및 공정한 국제 식품 교역 관행 확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에 대한 명시 여부
- ◆ 적용범위 : GMO와 기존 품종의 구분 방법 관련 표현 (“동등하지 않은” 또는 “상당히 다른”) 채택 여부
- ◆ 정의 : “GM/GE”를 “Modern Biotechnology”로 대체 또는 추가 여부
- ◆ 표시규정 : 표시 의무 사항에 윤리적 사항 포함 여부
- ◆ 혼입허용치 : 허용치 이하인 경우의 표시 허용 여부와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설정 여부
- ◆ 면제조항 : 특정 품목에 대하여 표시 예외 규정을 허용할 지 여부
- ◆ 표시방법 : 각종 표시 방법 예시 허용 여부
- ◆ 시행방법 : 표시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 및 확인 절차 고려 여부

□ 주요 논의 내용

- 1) 목적 : 쟁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3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 예정
 - “소비자 건강 보호 및 공정한 국제 식품 교역 관행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며, 소비자에 정보 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에 식품 표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적용범위 (Scope)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 1.1.1. 적절한 분석 결과 기존의 식품과 구성성분(Composition), 영양가 (nutritional value), 또는 용도 (intended use)가 다른 것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 1.1.2. 유전자변형/유전공학 생물체로 구성되거나 함유된 경우 또는 유전자 기술 (gene technology)에서 유래한 단백질이나 DNA를 함유한 경우, 또는
 - 1.1.3. 유전자변형/유전공학 생물체로부터 생산되었으나 유전자기술에서 유래한 단백질이나 DNA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Gene Technology : 자연적인 증식이나 재조합에 의해 일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세포나 생물체의 유전되는 유전자 물질을 변경시키는 데 사용되는 여러 기술의 집합을 의미] : 각주에 괄호로 처리

- 미국은 기존 식품과 다르지 않은 식품에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GMO 식품이 마치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인 표시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명 (호주, 아르헨티나 지지)
 - 대다수 국가는 Section 1.1.2의 DNA나 단백질을 함유하는 식품에 표시하지 - GMO로 생산되었으나 제조·가공후 DNA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에 표시하는 것은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 노르웨이, 인도, 유럽연합, 소비자자연맹(CI) 등은 소비자에 정보 제공과 선택을 위하여 모든 생명공학응용식품에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
 - 우리나라, 스웨덴, 아일랜드, 스페인, 유럽연합, 일본 등은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지침서(안)을 지지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 논의하기로 함
- 2) 정의 (Definition) : 정의 자체에는 이견 없음
- “유전자변형/유전공학 등 특정기술응용식품”, “생물체”, “유전자변형/유전공학”, “현대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정의 나열 (6단계)
- 3) 표시 규정 (Labeling Provisions) : 3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 예정
- Section 3.5의 ethical objection에 관하여 일부 대표단은 윤리 또는 문화적인 사항은 개별국가의 판단에 맡겨야 하므로 관련 내용 삭제를 요청

- 말레이시아 등은 종교적 또는 문화적 이유의 “dietary restriction”을 대한 표현 추가를 요구
 - 절충안으로 ethical objection 대신 “dietary restriction, based on religious and cultural practices”을 추가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4) 혼입 허용치 (threshold level) : 3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 예정
- 스위스, 인도, CI 등은 혼입 허용치 설정에 반대
 - 우리나라, 이태리 등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에 한하여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de minimis threshold level) 설정 지지
 - 일본, 태국 : 두가지 경우 모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5) 면제 조항 (exemption) : 3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 예정
- 노르웨이, 스페인, Green Peace 등은 면제 조항 삭제 주장
 - 고도로 정제 가공된 원료의 경우도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
 - 우리나라, 캐나다, 태국 등은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6) 표시 방법 (Label Declaration) : 3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 예정
- 6.2항에 제시된 9가지의 표시 방법에 대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표시 방법 예시 (괄호 처리)
 -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soya)
 - Genetically Engineered maize flour
 - Grown from seeds obtained from [modern] plant biotechnology
 - Contains (starch)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maize
 - Genetically Engineered (high oleic acid) : 특정 명시
 - Product of plant/animal biotechnology
 - Soybean (genetically modified/genetically engineered)
 - Soybean (genetically modified soybean not segregated)
 - Product of gene technology
 - 스페인, 인도는 동 예시중 일부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
 - 브라질은 동 내용은 예시로서 각 국가별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7) 시행 (Implementation) : 3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 예정

-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등은 증명, 제품추적, 분석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 논의 필요성 제기주요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동 회의에서 논의한 수정안을 3단계로 회원국에 의견 조희하고 31차 회의에서 4단계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

의제 7 : 영양 표시 지침서에 대한 개정 초안 (영양소 목록)

□ 추진 경과

- 제 25차 회의 : 3.2항을 개정하여 영양표시를 할 경우, 열량, 단백질, 이용가능한 탄수화물, 지방 함량 외에 포화지방, 당류, 섬유소, 나트륨도 표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시작
- 제 27차 회의 : 기존의 영양소외에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산, 나트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대해 영양강조표시를 하였을 경우, 당류, 섬유소, 포화 지방산,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토록 하는 안을 제23차 총회에 5단계로 상정
- 제 23차 총회에서 동 지침서의 의무표시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 논란이 있으므로 5단계로 승인하지 않고 동 위원회로 회부
- 제 28차 회의에서 지침서의 3.2.1.2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나트륨에 대한 부가적인 영양소표시는 3.2.2항으로 새롭게 추가
 - 3.2.3항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표시 포함
- 제 29차 회의에서 나트륨을 제외한 당류, 식이섬유, 포화지방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제시
 - 특히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지방산등의 표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개선되고 지방산의 경우 종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trans fatty acid도 추가

□ 주요 논의 내용

- 멕시코는 영양표시는 임의표시로 하여야 하며 각 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표명
- 말레이시아는 Section 3.2.1.2가 영양표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고 Section 3.2.2의 표현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

- 영국은 Section 3.2.1.3에 건강강조표시 대상 영양소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동의
- 캐나다는 Section 3.2.3과 3.2.4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Section 3.2.2의 표현을 바꾸자는 제안에 동의
 - 또한 “fibre” 대신에 “dietary fibre”로 표현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
- 건강상의 관점에서 trans-fatty acid를 표시하자는 의견과 이러한 표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 표출
- 캐나다는 콜레스테롤에 관한 강조표시를 할 경우 saturated fatty acid 및 trans fatty acid에 대한 표시는 필요하나 polyunsaturated fatty acid 표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 또한 n-3 및 n-6 polyunsaturated fatty acid를 polyunsaturated fatty acid로 함께 분류하는 것은 각 지방산의 뚜렷한 대사 기능이 있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
 - 스페인은 fatty acid 표시와 콜레스테롤 표시를 구분하자고 제안
- 개정안을 5단계로 상정하고 31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

의제 8 : 건강 및 영양 강조 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 추진 경과

- 식품의 영양소, 질병, 또는 건강 관련 표시에 대한 국가별 의견이 현저하게 달라 Codex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침서 설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제 27차 회의부터 정의, 허용범위, 사용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 논의 시작
- 제 28차 회의에서 기존의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지침서 제목을 「건강 및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로 개정
 - Working Group 회의에서 개정된 내용에 검토
- 제 29차 회의에서 건강강조표시의 3가지 유형에 대하여 논의
 - 질병위험감소 강조 표시를 할 경우 질병개선과 식이 섭취간에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표시 요건 강화
 - 강조표시의 예시를 명시하고 영·유아 식품에 대하여 건강 강조표시를 금지하는 초안 작성에 합의

□ 주요 논의 내용

- 의장은 동 초안을 31차 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금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
- 미국은 서문에 “국내보건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국제적 조화 목적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 표명
 - “가능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고 서문 내용 유지에 합의
 - 서문의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근거, 건강강조표시와 건전한 식사의 관계, 소비자 교육에 관한 내용은 괄호로 내용 대체
- 지침서 범위(Section 1.4)에 영유아용 식품의 건강 강조 표시 금지 및 영양 강조 금지 표시도 금지하자는 내용을 괄호로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결정
 - 인도, 우리나라, CI 등은 단서 조항 삭제 의견 표명
- Section을 재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Section 2.2.2의 제목을 “other function claim”으로 하고 “psychological function”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구체적인 예시안을 일반 예시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2.2와 2.2.3의 예시안의 “nutrient”를 “substance”로 수정
- 네덜란드는 Seciton 2.2.3에 허용된 강조표시는 강조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 (General Guidelines on Claims)과 상치되므로 이러한 강조표시는 질병의 위험보다는 질병의 위험 “인자(factor)”를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
- 브라질은 Section 7.5에 광고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
- 덴마크는 자국에서 건강강조표시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고 다음 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겠다는 의견 표명
- 동 지침서(안)을 5단계로 상정하기로 결정

의제 10. 원산지 표시에 관한 Discussion Paper

□ 추진 경과

- 제28차 회의에서 영국은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Codex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을 개정하자고 요청
 -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
- 제49차 집행이사회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 규격 개정 작업을 승인하지 않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 요청

- Codex 사무국이 금번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 준비

□ 주요 논의 내용

-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은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작업에 반대
 -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거나 식품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효과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국가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
- 미국은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식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개정할 필요성이 없고, WTO 및 WCO가 수행중인 작업과 중복될 수 있으며 업계는 구매처 입증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
- 영국은 Section 4.5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위원회가 재차 새로운 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원산지표시 목적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있음을 강조
 - 또한 WTO 작업에 Codex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스위스, 일본 등이 동 제안에 지지 의사 표명
- 제 3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III. 주요의제관련 전문번역본

총회 및 타분과위원회에서 외부된 사항들 (의제 2)

Traceability

- 당 분과위원회는 제49차 집행이사회에서 Codex의 traceability 논의에 대한 권고 사항을 언급하고, 타 분과위원회가 수행한 작업을 보고함. 캐나다 대표단은 Codex 분과위원회에서 traceability에 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일부 Codex 표시사항과 제품기준에 원산지표시를 포함, 제품추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함.
- 일부 대표단과 업저버는 traceability는 표시의 신뢰확보를 위한 당 분과위원회의 작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제품 추적과 관련한 일부 규정이 이미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표시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이들 대표단들은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CCFICS)에서의 작업은 표시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및 인증사항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일반원칙 분과위원회(CCGP)에서의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 분과위원회의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한편 다른 대표단들과 엇저버는 일반원칙 분과위원회(CCGP)가 타 분과위원회를 위한 일반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CCFICS가 이미 이 분야에서 작업중이므로 traceability에 관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시함. 또한 Codex에 traceability 또는 product tracing에 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CCGP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도 언급됨.
- 일부 대표단들은 product tracing은 위해관리(risk management) 조치의 첫 번째 단계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외의 다른목적에 적용할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식품안전상의 목적으로 traceability 및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무역관행에 적용하는 것과 구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일부 대표단들은 캐나다 대표단이 준비한 자료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하여 자료를 공람하거나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discussion paper를 준비할 것을 제안함. 당 분과위원회는 CCGP가 준비중인 discussion paper에는 traceability 또는 product tracing의 표시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들을 다룰것이라고 전하였으며 사무국측이 discussion paper를 마련함에 있어 캐나다가 마련한 자료를 참조할 것을 권고하기로 함.
- traceability에 관하여 당 분과위원회가 특별한 작업을 수행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당 분과위원회는 그러한 필요성을 타 분과위원회의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다음회의에서 더 논의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함. 당 분과위원회는 캐나다가 준비한 자료를 의견수렴과 다음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하기 위하여 공람하기로 함. 또한 국가의견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다면 유용할 것이라는데 동의함.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개정초안: Section 5 기준 (Criteria) 및 Annex 2 허용물질(Permitted Substances) (의제 4)

- 당 분과위원회는 제49차 집행이사회에서 본 지침서의 Section 5 기준 및 Annex

2 허용물질 부분을 검토하는 작업이 승인되었음을 보고함.

- 본회의 전에 개최된 Working Group에서 해당 Section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였음. Working Group 의장인 Ms Lovisolo는 논의결과를 제출하였음. Working Group은 Section 5 기준은 지침서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며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무역 촉진을 위하여 강력하고, 명확하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함.

Section 5

- 당 분과위원회는 Working Group이 제안한 Section 5 중 주요한 변경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국으로 하여금 Codex 기준 또는 국가기준을 이행토록 하는 Section 5 제목의 각주를 삭제함. 이에 따라 각국으로 하여금 5.1항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5.2항도 개정할 것임.
 - 유기생산식품에 허용되는 물질목록에 대한 모든 제안은 5.1항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기준을 준수한 것이어야 함.
 - 지침서의 사용자로 하여금 허용물질 사용뿐만 아니라 그의 생산 및 처리도 고려하도록 할 것임.
 - 예외적인 경우로 비료 및 토양조절제의 매개체 및 결합체의 화학적 추출과정 이 간주됨.
 - 토양생태계의 균형, 물, 공기에 대한 비료 및 토양조절제의 위해가능성을 평가토록 하는 조항의 마련
 - 사용자로 하여금 허용물질의 사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 특정지역, 특정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
 - 유기생산체제에 사용되는 물질이 환경, 생태, 소비자, 가축, 꿀벌의 건강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
 - 부지에 대한 특별 제한도 식물관련질병과 해충 및 잡초관리 조치에 적용되어야 함.
 - 가축생산에 사용되는 건설재료 기준 마련과 관련한 제안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가축생산품을 다루고 있는 Annex 1 B와 관련된다는데 동의하고, 향후 본 지침서를 검토할 때 다시 언급하여야 함.
 -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함.

- 유기식품을 대체방법으로는 생산하거나 저장할 수 없는 경우
-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으로 제품의 신뢰성이 유지되는 경우
-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가 제품의 전체적인 품질을 저하하지 않는 경우
- 5.2항을 회원국으로 하여금 5.1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목록을 개발 또는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 정보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5.3항을 5.4항으로 통합하여 5.1항 기준안에 근거한 요구사항을 강화함.
- 검토규정에 관한 모든사항은 Section 8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본 조항의 처음에 있는 각주를 삭제함으로써 검토기간 및 검토과정에 관한 혼동을 없앴.
- 당 분과위원회는 현 단계에서 유기식품생산에 허용되는 물질과 관련하여 마련된 예방조치들이 Section 5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과 연관되는 것 같다고 보고함. 검토과정중 지침서의 이 두부분이 연관되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함.
- EU를 대표한 스페인 대표단은 매개체와 결합체의 화학적 추출과정이 유기생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함. 당 분과위원회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5.1 (a)에 언급되어 있는 예외부분에 괄호를 두기로 함.
- Working Group은 Annex 2의 목록개정에 대한 제안사항들이 5.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전제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함.
- 현재 채택되어 있는 기준, 특히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득이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함. 그러나 이와같은 공백기간중에 제안된 물질들은 현재 채택되어 있는 기준의 지침서를 기준으로 검토될 것이며 또한 개정안의 내용도 고려할 것임.
- 당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 i) Annex 2를 3단계로 회람하여 기존의 Section 5가 적합한지의 여부와 목록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Section 5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함.
 - ii) Annex 2의 목록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지침서내에서의 목록의 목적등을 고려함.
- 당 분과위원회는 본 목록 개정에 대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Electronic Drafting Group을 마련하기로 함.

기 타

- 당 분과위원회는 제24차 총회에서 본 지침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대표단이 유기축산물에 허용되는 수의약품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함. 당 분과위원회는 축산물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현재 유전공학과 관련이 없는 수의약품은 아주 극소수이므로 수의약품과 관련한 목록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개정초안의 현황 : Section 5 기준 및 Annex 2 허용물질

- 당 분과위원회는 Section 5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집행이사회에서 5단계로 채택하도록 상정함(Appendix II 참조).
- 당 분과위원회는 Annex 2(허용물질) 부분은 3단계로 재회부하여 의견을 수렴 후 Drafting Group이 개정하여 다시 공람하기로 함(Appendix VIII 참조).
- 당 분과위원회는 Ms Lovisol과 Working Group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Section 5와 Annex 2를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회의 전에 Working Group을 다시 개최하기로 함.

유전자변형/유전공학등 특정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대한 권고안(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 : 정의(Definitions) (의제 5a)

- 당 분과위원회는 제24차 총회에서 정의부분의 적절한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6단계로 재회부되었음을 보고함. 또한 제3차 Codex 생명공학기술 응용식품 정부간 특별작업반(CTFBT) 회의에서 생명공학기술 응용식품의 위해도 분석에 대한 원칙서(안)(Draft Principles for Risk Analysis of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및 유전자재조합식물에서 유래한 식품의 식품안전성 평가지침(안)(Draft Guideline for the Conduct of Food Safety Assessment of Foods Derived from Recombinant -DNA Plant)이 8단계로 상정하는데 동의하였음을 보고함. “modern biotechnology” 정의는 지침안과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정의와 일치함. 사무국은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논의중이나 지침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함. 본회의 의장은 사안의 중요

성으로 볼 때 이번회의에서 가능한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역설함.

- 미국대표단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논의가 지침서와는 분리되어 다른 단계로 논의되는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침서과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일랜드와 브라질 대표단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함.
- 많은 대표단과 업저버들은 표시의 목적상 친숙한 용어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친숙한 “genetically modified/engineered”를 지지함. 이러한 맥락에서 아일랜드 대표단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식품표지상의 “modern biotechnology”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인디아 대표단은 “modern”이라는 단어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함.
- 반면 또 다른 많은 대표단들과 업저버들은 Codex 타 분과위원회와 카르티헤나 협약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용어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modern biotechnology” 용어를 지지함. 이들 대표단들의 일부는 자국내에서는 “modern biotechnology”가 소비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함. 브라질 대표단은 Codex 내의 용어일치를 위하여 지침서의 제목에 “modern biotechnology”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일본대표단은 “modern biotechnology” 용어사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의부분에서 “genetically modified/engineered” 용어를 삭제할 의도는 없다고 함.
- 첫 번째 의견교환후 EU를 대표한 스페인은 정의에서 사용된 용어를 실제표지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modern biotechnology”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함. 스페인 대표단은 이를 위하여 새로운 각주를 첨가하는 것을 제안함. Greepeace등 일부 업저버는 각주에 “modern biotechnology” 용어를 표시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그러나 일부 대표단은 표지에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 결정은 각회원국의 권한이라고 지적함. 일부 대표단은 절충안으로 제시한 스페인 대표단의 각주를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 미국대표단은 스페인 대표단이 제안한 각주에 제24차 총회 보고서의 153항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제안함. 또한 미국은 “modern biotechnology”만을 남기고 다른 정의와 각주 1과 2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표시에 필요한 용어는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스페인 대표단은 이러한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모든 정의와 현재의 각주를 그대로 둘 것을 요청하였으며 인도도 이를 지지함. 캐나다 대표단은 작년 회의에서의 절충안을 언급하고 현재의 정의와 각주를 그대로 두는 것을 제안함.

유전자변형/유전공학등 특정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대한 권고안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의 현황 : 정의(Definitions)

- 당 분과위원회는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스페인 대표단이 제안한 각주를 포함한 정의부분을 6단계로 회부하기로 함(Appendix III 참조).

유전자변형/유전공학등 특정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대한 권고안 (유전자변형/유전공학등 특정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대한 지침서안) : 표시규정(Labelling Provisions) (의제 5b)

- 당 분과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시간제약으로 지침서안에 대한 논의를 끝내지 못해 다시 3단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함. 캐나다 대표단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각 섹션별로 회원국과 업저버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한 working document를 제출함. 당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섹션별로 논의함.

제목(Title)

- 일부 대표단은 CTFBT에서 사용한 용어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modern biotechnology”를 사용한 제목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한편 일부 대표단은 지침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침서의 목적이 위해분석이 아닌 식품표시를 다루고 있으므로 지침서의 제목에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을 사용할 것을 지지함. 또한 “certain techniques”을 “techniques”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당 분과위원회는 제목과 정의부분 그리고 관련 부분에서 사용된 용어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지침서의 다른 부분을 검토하기로 함.

지침서의 목적(Purpose of the Guidelines)

- 멕시코 대표단은 첫 번째 문장에 사용된 “relevant”보다는 “necessary”가 더 적합하다고 제안함. 다른 대표단들은 이러한 개정제안에 반대하였으나 당 분과위원회는 “relevant”가 지침서의 명확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삭제하기로 함.
- 일부 대표단은 식품표시 역할에 관한 마지막 문장이 표현이 장황하여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미국대표단은 해당문장이 규정집의 Codex 의사결정시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범위 원칙(Statement of Principle)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언급함. 그러나 다른 대표단들은 이 문장이 Statement of Principle의 세 번째 원칙과 동일하여 Codex 작업의 중요한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consumer choice”도 일반표시규정에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함. 그러나 호주대표단은 이 문장이 Statement of Principle의 세 번째 원칙과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함. 논의 후에 당 분과위원회는 식품표시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thereby facilitating consumer choice)”로 하기로 합의함. 첫 번째 문장의 괄호는 삭제하고 두 번째 문장은 그대로 두기로 함.

Section 1. 적용범위(Scope)

- 미국 대표단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 특히 기존의 식품과 다른 식품에 대한 표시부분에 중점을 두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호주와 브라질 대표단도 이를 지지함. 그러나 다른 대표단들은 이 규정은 생산방법에 근거한 표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지침서를 총괄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표명함. 멕시코 대표단은 사례별 평가(case by case evaluation)를 제안하였으나 당 분과위원회는 사례별 평가는 위해평가와 관련된 것이지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함.
- 당 분과위원회는 Section 1.1.1과 “no longer equivalent/differ significantly”에 대하여 자세한 논의를 하였으며 the nature of the comparison, the reference to natural variation, 이러한 비교에 적용되는 제품의 종류(the type of products covered by this comparison)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캐나다 대표단등이 제안한 절충안에 합의함. 또한 다른 관련 Section과 연계하여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미국대표단은 기존 식품과 다르지 않은 식품에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며 표시를 시행함에 있어 실제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에 반대함.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표단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함. 호주 대표단은 일반 표시사항은 국제적 합의를 이룰 것 같지 않으며, 규정집 Statement of Principle의 두번째 원칙에 언급되어 있는 기타요소에 관한 문안에 의거할 때 개별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함.

- 한편 다른 대표단들은 Section 1.1.2의 DNA 및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품에 표시하는 것을 지지함. 그러나 GMO에서 생산되었으나 DNA 및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에는 표시하는 것은 실제로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반대함. EC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지침서안을 지지함.
- 노르웨이 대표단은 소비자의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을 위하여 다른식품과의 차이점과 관계없이 모든 생명공학응용식품에 표시를 하는 것을 지지함. 인도 및 몇몇 업저버기구들도 이를 지지함.
- IBFAN(International Baby Food Action Network)은 실험을 거치지 않은 GM 대두를 함유하는 유아식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모든 생명공학응용식품에 표시하는 것을 지지함.
- 당 분과위원회는 제품의 특징과 생산방법을 구분하여 section을 다시 구분한 캐나다 대표단의 제안을 소개하였으나 여러 가지 논의후 1.1.2와 1.1.3을 그대로 두기로함. 이 두가지 section을 자세하게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및 미국 대표단은 괄호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브라질 대표단은 “gene technology” 정의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당 분과위원회는 각주에 “gene technology” 정의를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할 수 없어 괄호로 두기로 함.

Section 3 표시규정(Labelling Provisions)

- 네덜란드 대표단은 언급된 성분표시가 의무사항이므로 Section 3.3에 “should”보다는 “shall”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 캐나다 대표단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Section 3.3을 “substances which may result in physiological or metabolic disorders for certain sections of the populations”와 “should be labelled”로 말을 바꿀 것을 제안함. 캐나다의 이 제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캐나다가 제안한 문구와 “should/shall”에 괄호를 두기로 함. 미국 대표단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보입장을 표명함.
- Section 3.4b)에 대하여 일부대표단들은 “other parameter”를 삭제하거나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논의후 당 분과위원회는 이 용어를 삭제하기로 함.
-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대표단은 기존의 식품과 상당히 다르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는 임의표시로 할 것을 주장함.

-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대표단들은 Section 3.4 b) 즉, GMO로 생산되었으나 DNA 및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의 표시는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유보입장을 표명함.
- 미국 대표단은 생산방법에 근거한 표시에 반대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생산방법에 관한 표시를 임의로 할 경우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말함.
- 다른 대표단들과 업저버기구들은 모든 제품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지침서안을 지지함. 다음회의에서 논의할 조건으로 그대로 두기로 함.
- 당 분과위원회는 Section 3.5의 ethical objection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일부 대표단은 윤리 또는 문화적인 사항들은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되며 개별국가에 맡겨야 하므로 윤리 또는 문화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몇몇 대표단들은 종교 및 문화에 대한 표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 다른 대표단들은 "dietary restriction"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당 분과위원회는 절충안으로 제안된 "dietary restriction, based on religious and cultural practices"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정된 내용을 괄호로 두기로 함.

Section 4. 혼입허용치(Threshold Levels)

- 몇몇 대표단과 업저버기구들은 GM
- 표시는 모든 경우에 의무사항이어야 하므로 threshold level에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그러나 다른 대표단들은 GM 식품 및 식품원재료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threshold level 설정을 지지하고 본 조항의 두 번째 부분(de minimis threshold level)만을 남기는 것을 제안함. 일부대표단은 두가지 형태의 threshold level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Section에서 괄호를 없애는 것을 제안함. 당 분과위원회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좀더 논의하기 위하여 전체를 괄호로 두는 것에 합의함.

Section 5. 면제조항(Exemptions)

- 몇몇 대표단과 업저버기구들은 면제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고도로 정제된 원료인 경우에 수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다른 대표단들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함. 당 분과위원회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괄호로 두기로 함.

Section 6. 표시방법(Label Declarations)

- Section 6.1 a)에 대하여 스위스 대표단은 “genetic characteristics”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대로 두기로 함.
- Section 6.2에 대하여 뉴질랜드 대표단은 식품표시가 해당(intended) 소비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문안을 제안함. 당 분과위원회는 도입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브라질등이 제안한 개정문안을 채택하기로 함. 논의후 당 분과위원회는 “intended”를 괄호로 두어 더 논의하기로 함.
- 당 분과위원회는 예시의 필요성과 유지가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음. 스페인과 인도 대표단은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삭제할 것을 제안함. 인도 대표단은 “modern biotechnology”를 사용한 사례들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모두 삭제할 것을 제안함. CI는 CI의 각국회원들과의 논의결과 소비자들이 “modern biotechnology”, “biotechnology”, “gene technology”와 같은 용어를 “genetic engineering and/or genetic modification”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을 표시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언급함. 다른 대표단들은 제시되어 있는 사례들은 단지 설명적인 것이며 표지에 사용하는 용어들은 국가별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함. 모든 사례는 그대로 괄호로 두기로 함.
-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은 “biotechnology” 용어, 특히 그 축약형인 “bio”가 유기농식품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용어와 비슷한 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함. 이는 유기생산시스템에는 GMO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유기농업자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임. 그러므로 IFOAM은 Section 6.2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조항을 첨가할 것을 제안함.

Section 7. 시행방법(Implementation)

- 몇몇 대표단은 증명, product tracing, 분석방법, 관리에 필요한 기타사항, 소비자 신뢰확보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좀더 논의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표명함. 본 조항을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괄호로 두기로 함.

유전자변형/유전공학등 특정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현황 :
표시규정(Labelling Provisions)

- 당 분과위원회는 중요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지침서 안을 3단계로 재회부하여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Appendix IV 참조).

영양표시 지침서에 관한 개정 초안(의제 7)

- HO 대표는 2002. 1. WHO와 FAO 공동으로 식이와 건강에 관한 국제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Diet, Nutrition and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당 분과위원회에 전하면서 영양표시는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식사와 건강에 관한 공중보건 전략과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당 분과위원회는 지난회의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본 개정안을 3단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함. 당 분과위원회는 본 개정안을 섹션별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
-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대표단은 영양표시는 임의표시로 하여야 하며 국가권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Section 3.2.1.2가 영양표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고 Section 3.2.2의 표현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함.
- 당 분과위원회는 Section 3.2.1.3에 건강강조표시 대상 영양소를 포함시키자는 영국 대표단의 제안에 동의함.
- 당 분과위원회는 Section 3.2.3과 3.2.4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Section 3.2.2의 표현을 바꾸자는 캐나다 대표단의 제안에 동의함. 또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fibre” 대신에 “dietary fibre”로 하기로 함. 일부 대표단은 건강상의 관점에서 trans-fatty acid를 표현하는 것을 지지함. 한편 다른 대표단과 업저버기구들은 이러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표명함. 일부대표단과 IDF는 trans-fatty acid는 복잡한 화합물이며 건강에 이로운 종류가 있는 반면 해로운 종류도 있다고 언급함. 개정안 전체적으로 trans-fatty acid에 괄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동의함.

- 일본 대표단은 3.2.1.4를 적용하는데 있어 국가가 의무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들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사무국측은 국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Section 3.2.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 WSRO(World Sugar Research Organization)는 당류를 표시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Statement of Principle의 첫 번째 원칙에 모순되므로 Section 3.2.2과 3.2.3에 당류표시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함. ISDC는 나트륨에 관한 강조표시가 있는 제품이 지방함량이 0일 경우 saturated fatty acid 및 trans-fatty acids도 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함. 따라서 ISDC(International Sugar Drink Council)는 식품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양소에만 표시를 하도록 현재의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그러나 일부 대표단들은 이 표시가 소비자 정보, 영양 및 교육에 중요한 규정이라고 지적하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IACF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Food Organization)는 강조표시와 관계없이 의무 영양표시 도입을 제안함.
- 당 분과위원회는 식이섬유소 표시에 관한 Section 3.2.2의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기로 함.
- 3.2.4에 대하여 호주 대표단은 monounsaturated fatty acid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괄호로 두기로 함. 캐나다 대표단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강조표시를 할 경우 saturated fatty acid 및 trans fatty acid는 표시하여야 하나 polyunsaturated fatty acid 표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n-3 및 n-6 polyunsaturated fatty acid를 polyunsaturated fatty acid로 분류하는 것은 이들 지방산 각각의 뚜렷한 대사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음. 스페인 대표단은 fatty acid 표시와 콜레스테롤 표시를 구분하는 것을 제안함. 이러한 제안을 근거로 하여 캐나다 대표단과 몇몇 대표단이 마련한 문구에 동의함. polyunsaturated fatty acid 표시에 관한 개정문구는 괄호로 두기로 함.
- Section 3.2.6에 대하여 일부 대표단은 비타민 및 무기질 표시를 위한 NRV의 최소 15%로 하는 것을 제안함. 한편 일부 대표단은 아연과 같은 비타민은 식품중에 15% 수준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남아프리카 대표단은 “significant amount”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비타민 및 무기질 표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주의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Section 3.2.6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논의후 당 분과위원회는 NRV의 5% 또는 100g 또는 100ml 또는 serving

당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침의 threshold가 마련되어 있는 영양소를 허용하는 수정안에 동의함.

- 상기한 fatty acid 표시에 관한 논의에 따라 당 분과위원회는 Section 3.4.7에 trans-fatty acid와 monounsaturated fatty acid를 괄호로 포함시키기로 함. 일본 대표단은 복잡한 지방산표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영양표시 지침서에 관한 개정 초안의 현황

- 당 분과위원회는 개정안을 5단계로 상정하기로 함(Appendix VI 참조).

건강 및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의제 8)

- 당 분과위원회는 작년회의에서 본 지침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3단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함. 본 지침서에 대한 Working Group을 본 회의전에 소집하였으며 Dr Margaret Cheney는 Working Group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한 변경사항을 소개함.
- Working Group은 미국 대표단이 서문의 국내보건정책이라는 언급이 국제적 조화 목적에 위배되므로 반대했음을 보고함. 그러나 많은 대표단이 많은 국가들이 국가보건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우”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국내보건정책이라는 언급을 유지하기로 함. 서문의 두 번째 문장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근거, 건강강조표시와 건전한 식사의 관계, 소비자교육에 관한 내용은 괄호로 하여 그 내용이 대체되었음.
- Section 1.4에서 강조표시는 영유아용 식품은 특수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식품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의됨. 영국대표단은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ISDC도 이 제안을 지지함. 영양강조표시에 관한 사항은 괄호로 하여 첨가하기로 함. 인도등 일부 대표단과 업저버들은 이 금지규정이 일반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건강강조표시도 Codex 영유아식품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Codex 규격을 언급하고 있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 Working Group에서 section을 재구성하는 제안을 논의하였으며 Section 2.2.2의 제목을 “other function claim”으로 하고 other에 괄호를 두기로 함. “psychological function”은 더 논의하기 위하여 Section 2.2.2에 그대로 두기로 함. 원래 있던 구

체적인 예시안을 일반예시안으로 대체하기로 함. 일부대표단이 “nutrient” 용어가 2.2.3의 예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2.2.2와 2.2.3에 해당하는 예시안 문구중 “nutrient” 용어는 “substance”로 수정함.

- Section 7.1.2에서 국가보건정책이라는 문구는 서언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함. 그러나 인도등 몇몇 대표단은 Codex내의 일치화에 부합하면서 상위규정과 일치하는 현행 보건정책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보건정책 문구를 유지할 것을 제안함.
- 네덜란드 대표단은 Seciton 2.2.3에 허용된 강조표시는 강조표시에 관한 일반원칙(General Guidelines on Claims)과 상치되며 이러한 강조표시는 질병의 위험보다는 질병의 위험 “인자(factor)”를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스페인 대표단은 2.2.3에서 언급하는 강조표시의 유형은 식품을 의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브라질 대표단은 Section 7.5에 표시외에 광고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몇몇 국가들이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였음. 당 분과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함. 이에 대하여 Codex 사무국측은 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광고도 언급되어 있음을 보고함.
-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회원국들에게 FAO/WHO Expert Consultation on Evaluation of Health and Nutritional Properties of Probiotics in Food 보고서가 논의중인 사안들과 관련되므로 본 지침서와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함. 당 분과위원회는 언급한 보고서에 건강강조표시를 과학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고 전함. 덴마크 대표단은 건강강조표시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소개하고 다음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함. 뉴질랜드 대표단은 4.1항의 문구를 7.1.6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당 분과위원회는 Working Group 의장과 Working Group에 고마움을 전함. 당 분과위원회는 다음회의 전에 다시 Working Group을 개최하기로 함.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 초안의 현황

- 당 분과위원회는 본 지침서안을 5단계로 상정하기로 함(Appendix VII 참조).
- 당 분과위원회는 CCFNSDU가 건강강조표시를 위한 과학적기준 마련작업을 시작한 적이 있었음을 상기함. 당 분과위원회는 건강강조표시를 위한 과학적 기준

이 건강강조표시를 입증하는데 있어 지침과 명확성을 부여할 것이므로 과학적 기준 마련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CCNFSDU에 요청하기로 함.

원산지표시관련 Discussion Paper (의제 10)

- 당 분과위원회는 제9차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을 개정하는 작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고함. 그러나 집행이사회는 개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사무국 측에 제30차 CCFL에서 논의할 Discussion Paper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사무국측은 집행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준비한 Discussion Paper(CX/FL 02/11)를 준비함. 본 문서에는 World Customs Organization 및 WTO에서 수행한 작업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Section 4.5.1 개정을 포함한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가능한 방법을 고려함.
- 다수의 대표단들과 업저버기구들은 당 분과위원회가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부가적인 원산지표시의 효과와 실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원산지표시는 과학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식품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관련작업 진행에 반대하였으며 브라질 대표단은 이를 지지함. 또한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없이 국가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말함. 칠레 대표단은 처음의 제안에서 언급된 예외사항을 언급하면서 예외사항을 고려한 규격설정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예외사항은 개발도상국 제품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미국 대표단은 이와 같은 표시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식품안전성에 근거하여 개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표명함. 당 분과위원회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작업을 하는 것은 WTO 및 WCO가 수행중인 작업과 중복될 수 있으며 업계는 구매한 원료의 다양한 출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원산지표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TBT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함. 다른 대표단들과 업저버기구들은 특히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비용문제 및 시행에 있어서의 난점들을 지적함. IFFA(International Frozen Food Association)는 원산지표시 도입은 원재료표시란의 크기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이며 실용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 영국 대표단은 Section 4.5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 분과위원회가 총회에

새로운 작업으로서 제안할 것을 요청함. 영국 대표단은 이 제안이 원산지표시에 관한 현 Codex 규정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함. 많은 회원국들이 원산지 표시규정을 임의 또는 의무표시로 도입하고 있으며 원산지 정보, 특히 식육 및 식육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더욱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언급됨. 몇몇 국가들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영국 대표단은 원산지표시 목적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사안을 WTO에만 전담하는 대신 Codex도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그러나 인도 대표단은 영국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WTO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문서와 일치되어야 한다고 경고함. 말레이시아, 스위스, 한국대표단등 많은 대표단과 업저버기구들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영국의 제안을 지지함. 일본 대표단도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현 규정을 검토할 것을 지지함. CI는 현재 식품의 원산지와 가공한 국가 사이에 혼란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원산지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어 영국의 제안을 지지함.

- 당 분과위원회는 대표단들과 업저버기구들의 의견이 매우 다르다고 언급하고 이 사안을 중지할 수도 없고, 제49차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Section을 개정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도 없다고 봄. 결론적으로 당 분과위원회는 사무국이 준비한 문서를 다시 공람하여 다음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함.